

法律 第 4746 號

圖書館 및 讀書振興法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(目的) 이 법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·운영과 讀書振興을 위한 環境造成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 및 文庫의 健全한 육성과 讀書增進活動을 活性化함으로써 社會 각 분야에 대한 知識·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(定義)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1.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·調査·研究·學習·教養 등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.
2. “文庫”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設을 말한다.
3. “圖書館資料”라 함은 圖書館(“文庫”를 포함한다)이 蒐集·정리·分析·보존·蓄積하는 圖書·記錄·小冊子·連續刊行物·樂譜·地圖·사진·그림 등 각종 印刷資料, 映畫필름·슬라이드·音盤·비디오物·마이크로形態物·테이프 등 각종 視聽覺資料, 電算化資料, 公文書 등의 行政資料, 鄉土資料 기타 圖

書館 奉仕 및 文庫 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.

4.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·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 5. “大學圖書館”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(教育大學·師範大學·放送通信大學·開放大學·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 6. “學校圖書館”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)에서 教員과 學生의 教授·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.
 7. “專門圖書館”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·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分野에 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 8.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障礙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·教養·調査·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- 第 3 條(圖書館 및 文庫의 種類)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·公立圖書館·私立圖

書館으로 구분하고,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·公共圖書館·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.

② 文庫는 그 設立者에 따라 公立文庫와 私立文庫로 구분한다.

第4條(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) ① 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

② 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平生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.

第5條(圖書館 및 文庫의 施設·資料) ① 圖書館 및 文庫는 圖書館資料(이하 “資料”라 한다)의 보존·整理와 利用者의 편의를 위하여 그 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별 施設·資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6條(司書職員등)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·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(司書)를 두어야 하며,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教育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, 2級正司書 및 準司書로 구분하며,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 등의 研修,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文庫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 등을 둘 수 있다.

第7條(文化施設과의 協力) 圖書館 및 文庫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化院·博物館·美術館 등의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.

第8條(資料의 交換·移管·廢棄 및 除籍) ① 圖書館 및 文庫는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

資料를 상호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9條(圖書館및讀書振興基金) ① 政府는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, 施設 및 資料의 확충,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, 기타 圖書館發展과 讀書進興에 필요한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및 讀書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 基金은 다음 各號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이 관리·운용한다.

1.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·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보조

2. 讀書振興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

3.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讀書振興事業 추진

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

1. 政府出捐金

2.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의 寄附金

3.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

4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

第10條(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) ①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進興에 관한 다음의 중요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부에 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圖書館發展 기본정책

2.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

3.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

4. 圖書館과 文庫의 設立·운영 및 施設의 확충

5. 基金의 造成計劃

6. 基金의 관리·運用計劃

7. 基金의 관리·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8. 기타 圖書館政策과 讀書振興에 관하여 文化

體育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

② 地域社會에서의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讀書振興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方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(이하 “地方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·地方委員會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11條(金錢등의 寄附) 法人·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·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基金·圖書館 및 文庫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.

第12條(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에 대한 지원)

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의 設立·運營者에 대하여 圖書館資料의 特別購買, 政府刊行物 및 公共刊行物의 우선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운영이 건전한 私立圖書館과 私立文庫에 대하여 運營經費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第13條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第14條(圖書館協會등의 設立) ① 圖書館 또는 文庫는 상호간의 資料交換, 業務協力과 운영·管理에 관한 研究, 관련 國際團體와의 相互協力 및 職員의 資質向上과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 또는 文庫協會(이하 “協會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

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.

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

④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.

第2章 國立中央圖書館

第15條(國立中央圖書館) ① 文化體育部長官 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

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.

第16條(業務)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國內外資料의 蒐集·정리·分析·보존·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
2. 國內資料의 제출관리
3.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
4. 各種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
5.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總括
6.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
7. 다른 圖書館 및 文庫의 業務·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에 대한 指導·지원
8.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
9. 圖書館에 관한 調査·研究
10. 圖書館 및 文庫의 職員에 대한 研修
11.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

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 한다.

第17條(資料의 제출)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·音盤·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資料 2부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資料 2부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. 修訂

增補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者에게 지체없이 提出畢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資料에 대한 相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.

④ 國立中央圖書館長은 資料제출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資料제출의 節次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18條(國際標準資料番號) ①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(이하 “資料番號”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

②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등 관련 專門機關·단체등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.

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3章 公共圖書館

第19條(設立) ① 國家, 地方自治團體,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(이하 “法人”이라 한다),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

第20條(業務)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·教育 센터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資料의 蒐集·정리·보존·蓄積 및 公衆에 의 이용
2.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
3. 地方行政 및 産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
4.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
5. 講演會·鑑賞會·展示會·讀書會 기타 文化 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獎勵

6. 다른 圖書館 및 文庫와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

7.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査·研究

8.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

第21條(公共圖書館의 設立·육성등)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公共圖書館은 어린이·老人·障人들에게 圖書館奉仕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·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立하고 이를 指導·육성하여야 한다.

第22條(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)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(이하 “公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를 設立·운영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를 부담하여야 하며,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監이 設立·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·운영 및 그 資料購入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第23條(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지원)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

있다.

第24條(國·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)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.

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运营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.

③ 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运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25條(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)

①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유지 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은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.

③ 文化體育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26條(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지원)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“私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균형있는 발전과 閱覽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

導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第27條(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)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

第28條(私立公共圖書館의 보조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运营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第29條(使用料)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료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료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第30條(資料의 제출)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부를 管轄地域 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第4章 大學圖書館

第31條(設置)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

第32條(業務)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정리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
2.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
3. 圖書館이용의 體系의 指導
4.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
5.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

한 業務

第 33 條(指導·監督)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

第 5 章 學校圖書館

第 34 條(設置) 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(이에 준하는 각종 學校를 포함한다)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

第 35 條(業務)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정리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
2. 讀書指導 및 圖書館이용의 指導
3. 視聽覺資料의 開發·製作 및 이용
4.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

第 36 條(指導·監督)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

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

第 37 條(設立 등) ① 國家·地方自治團體·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

②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礙人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 5 條 및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

第 38 條(準用) 第 25 條 第 2 項·第 3 項 및 第 26 條 내지 第 28 條의 規定은 第 3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.

第 7 章 文庫

第 39 條(文庫의 設立)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政府投資機關 및 관련 團體 중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機關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獎하여야 한다.

② 市長·郡守·自治區의 區廳長(이하 “市長·郡守”라 한다)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邑·面·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할 수 있다.

③ 市長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事業場·住居團地·建築物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衆利用施設 중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施設에 대하여 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獎하여야 한다.

④ 私立文庫를 設立·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第 40 條(文庫의 운영) ① 文庫의 設立者는 讀書資料의 확충과 讀書指導의 실시등 讀書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立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지원을 받아 운영한다.

③ 私立文庫는 該當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·支援을 받아 運營한다.

第 8 章 圖書館協力網

第 41 條(圖書館協力網의 구성)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資料의 流通·管理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(이하 “協力網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야 한다.

1. 電算化된 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
2. 書誌編纂·情報處理·奉仕活動 및 施設 등의 標準化
3. 分擔收書·相互貸借·綜合目錄·印刷카드制度 등 圖書館운영의 효율화
4.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

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,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.

第 42 條(中央館의 業務)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
2. 協力網의 機能수행에 관한 企劃·調整·指導
3. 協力網운영의 統轄

第 43 條(地域代表館) ① 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에 두되,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.

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의 協力網運營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·郡 및 區(自治區에 한한다)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.

第 44 條(協力등) 協力網機能의 효율적 遂行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·체제 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종 文化施設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.

第 45 條(協力網의 운영)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9 章 讀書振興

第 46 條(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)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

강구하여야 하며,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
2. 圖書館·文庫 등 讀書振興을 위한 施設·設備의 확충
3. 讀書資料 등의 확보를 위한 產業體 및 地域住民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讀書活性化 등의 業務推進
4. 기타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

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相關機關·團體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第 47 條(讀書教育 등)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國民에게 讀書教育의 機會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教育部長官은 教育法의 規定에 의한 大學·師範大學·教育大學·專門大學·各種學校를 제외한 각 學校에서 讀書教育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教育課程의 編成과 讀書關聯 教科用圖書의 編纂·발행 등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.

第 48 條(讀書의 달 行事 등) ① 國家는 國民들의 讀書意慾을 鼓吹하고 讀書의 生活化 등 讀書振興活動에 대한 國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“讀書의 달”을 設定하여야 한다.

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讀書振興에 功績이 있는 者와 讀書實績이 우수한 者 등에게 褒賞 또는 表彰을 수여하거나 獎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“讀書의 달”의 設定과 讀書關聯行事, 褒賞 및 表彰, 獎學金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49 條(學校 등의 讀書振興活動)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에 소속된 學生 또는 職員 등의 讀書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學校·職

場에 讀書모임을 두도록 獎勵하여야 하며,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.

第 10 章 補 則

第 50 條(權限의 위임·委託) 이 법에 의한 文化體育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 및 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.

第 51 條(關聯部處와의 협조)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은 讀書振興을 위한 教育·行事 등에 관한 중요한 決定이나 施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

第 52 條(年次報告) 政府는 매년 讀書振興에 관한 施策 및 그 施行結果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

第 53 條(過怠料) ① 第 25 條 第 1 項 또는 第 3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개설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② 第 13 條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③ 第 17 條 第 2 項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당해 資料定價(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)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第 54 條(過怠料의 賦課·徵收節次) ① 第 53 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이 賦課·徵收한다.

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

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,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

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附 則

第 1 條(施行日)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 부터 施行한다.

第 2 條(다른 法律의 廢止) 圖書館振興法은 이를 廢止한다.

第 3 條(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)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.

第 4 條(國·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 24 條 第 1 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.

第 5 條(圖書館協會등에 대한 經過措置) ①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施行당시 이미 設立된 社團法人 “새마을文庫中央會”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. 다만 “새마을文庫中央會”에 대한 指導·監督은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內務部長官이 한다.

第 6 條(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)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등의 行政機關이 행한 登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

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第7條(다른 法律의 改正등) ① 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28條중 “圖書館振興法”은 “圖書館 및 讀書振興法”으로 한다.

②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別表중 39.의 “圖書館進興法”을 “圖書館 및 讀書振興法”으로 한다.

③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振興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본지에 게재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후 제166회 임시국회 본회의(1994년 3월 3일)에서 통과되어, 법률 4746호(1994년 3월 24일)로 공포되었으며 199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아울러 동법안의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·제정일지를 게재한 이유는 동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를 모든 도서관인께 알리고자 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자 주〉